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육·훈련·자격·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917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등(안 제23조의2 신설)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규정하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저축·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개인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직무

능력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해지·관리,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직무능력의 인정 등 직무능력은행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 정보가 분실이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함.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 위탁 근거 규정(안 제52조제2항)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관리,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안 제52조의2제1항)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에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등) ① 법 제25조 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 가입 이력에 관한 정보
2. 개인별로 취득한 「군인사법」에 따른 국방자격 및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4. 그 밖에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저축·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이하 “직

무능력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 인적사항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

제23조의3(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개인별 직무능력계좌 발급, 해지 및 관리 업무
2.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업무
3.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 관련 업무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심사 및 인정 관련 업무
5. 직무능력정보 관리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분석 및 제공 관련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52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제5호의3, 제5호의5 및 제5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의3.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의5.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의6.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의2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3조의2(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등) ①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u> <u>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 가입 이력에 관한 정보</u> <u>2. 개인별로 취득한 「군인사법」에 따른 국방자격 및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u> <u>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등록정보</u> <u>4. 그 밖에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 훈련 정보 등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u>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저축·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계좌(이하 “직무능력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인적사항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

제23조의3(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개인별 직무능력계좌 발급, 해지 및 관리 업무

2.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업무

3.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 관련 업무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심사 및 인정 관련 업무

5. 직무능력정보 관리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분석 및 제공 관련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정확성 및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5의2. (생략)

<신설>

<신설>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의3.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의4.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5의5.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의6.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

6. · 7. (생 략) ③ ~ ⑤ (생 략)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고용노동부장관 (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 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 13. (생 략) ② · ③ (생 략)	<u>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u>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 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u> 5의3. <u>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 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 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u> 6.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